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392 청구이의
원 고 정OO (58-1)
전남 화순군
송달장소 광주 남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피 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역삼동)
송달장소 대전 유성구 문지동 104-4
대표이사 허진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송희섭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7. 2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51 사건의 2013. 5. 3.자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4카기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 2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51 위약금 청구 사건의 2013. 5. 3.자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자금을 빌려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해 2010. 10. 29. 피고에게 당시 원고의 소유였던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 58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이OO, 박OO, 채권최고액을 62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나.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0. 10. 29. 원고, 이OO, 박OO에게 200,000,000 원(이하 '이 사건 1차 자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 200,000,000원을 지급했다.

1) 원금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영업 개시 약정 위반 등의 경우 기한 이익 상실)

2) 이자 : 무이자를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가 자금지원계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 일로부터 6개월간은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5%

3) 위약금(6개월 내에 충전소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 자금 지원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

다. 피고는 또한 2012. 1. 3. 이강풍에게 위약금의 비율만 다르게(연 7.3%) 정하고(나머지 조건은 나항과 같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자금'이라 한다.)을 대여했다.

라. 피고는 원고 등이 위 영업개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12. 4. 이 사건 1,2차 자금의 반환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고, 2012. 12. 6. 가항의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마. 이 사건 1차 자문에 관한 위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2차11311)의 주문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대하여 이OO, 박OO은 이의를 하지 않아 위 두 사람에게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이OO, 박OO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 부터 2011. 5. 1.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2012. 12. 20.(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1.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라.

바. 그런데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2013가합951)에서 2013. 5.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주문 기재의 화해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고지되어 2013. 5. 23.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원고(정회일)는 이OO, 박OO과 연대하여 피고(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에게 2013. 8. 31.까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200,000,000원 중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즉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는 연 5%에서 연 20%로 증액되는 것임)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한편 이 사건 2차 자금에 관한 위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2차11312)은 채무자(이OO)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3. 1. 4. 확정되었는데, 그 주문은 아래와 같다.

이OO은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2. 7. 3.까지는 연 6.5%, 그 다음 날부터 2012. 12. 20.(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3%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및 독촉절차비용 91,020원을 지급하라.

아.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라항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2012타경18097)에서 261,010,000원에 낙찰되었고, 피고는 2013. 11. 21. 280,871,649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차 자금채무의 변제이익이 이 사건 2차 자금채무의 변제이익보다 더 크므로, 1의 아항의 배당금은 이 사건 1차 자금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가 280,871,649원을 배당받은 2013. 11. 21. 당시 이 사건 1차 자금채무의 수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액)은 237,342,465원(원금 200,000,000원 + 이자 28,356,164(2010. 11. 1.부터 2013. 8. 31.까지 연 5%) + 지연손해금 8,986,301원(2013. 9. 1.부터 2013. 11. 21.까지 연 20%))으로서 위 배당금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위 배당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 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와 도래 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나. 1) 이 사건의 경우도 위 배당금이 이 사건 1,2차 자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법정 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자금채무에 관하여는 원고와 이OO,

박OO의 변제 의무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확정되어 변제충당의 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사건 2차 자금채무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할 경우에는 2차 자금채무가, 1의 마항의 지급명령(2012차13111)에 의할 경우에는 1차 자금채무가 변제의 이익이 더 많은바, 변제충당의 순서나 금액은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이OO, 박OO의 채무 중의 일부이므로, 변제이익의 많고 적음의 판단이나 변제충당의 항목, 항목별 금액 등의 특징은 위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위 가항의 법리 및 1의 마,사항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위 배당금은 별지 <표1><표2>와 같이 2013. 11. 21.까지의 이 사건 2차 자금 관련 비용(독촉절차 비용), 이 사건 1,2차 자금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이 사건 1,2차 자금의 위약금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원본에 충당할 자금은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 중 위 배당에 의해 소멸한 것은 200,000,000원에 대한 2013. 11. 2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영남

 판사 김동관

 판사 유명호

<별지>

<표1> 2013. 11. 21. 당시 이 사건 1,2차 자금의 원리금							
구분	1차 자금			2차 자금			
원금(원)	200,000,000			150,000,000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발생 시기	2010-11-01	2011-05-02	2012-12-21	2012-01-03	2012-07-04	2012-12-21
	발생 종기	2011-05-01	2012-12-20	2013-11-21	2012-07-03	2012-12-20	2013-11-21
	일수	182	599	336	183	170	336
	비율	6.5%	12.5%	20.0%	6.5%	12.5%	20.0%
	금액(원)	6,482,192	41,027,397	36,821,918	4,888,356	8,732,877	27,616,438
위약금	발생 시기	2011-05-02		2012-07-04			
	발생 종기	2013-11-21		2013-11-21			
	일수	935		506			
	비율	36.5%		7.3%			
	금액(원)	187,000,000		15,180,000			

<표2> 총당내역

총당 항목	금액(원)	배당금의 잔액(원)
		280,871,649
2차 자금에 관한 비용	91,020	280,780,629
1차 자금의 1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482,192	274,298,437
1차 자금의 2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1,027,397	233,271,040
2차 자금의 1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888,356	228,382,684
2차 자금의 2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732,877	219,649,807
1차 자금의 3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6,821,918	182,827,889
2차 자금의 3차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7,616,438	155,211,451
1,2차 자금의 위약금	155,211,451	0